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3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 : 김 현 • 박민규 • 정진욱

이정헌 · 송재봉 · 주철현

최민희・황정아・김 윤

문금주 · 김영환 · 이병진

이광희 • 강준현 • 박희승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장을 위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 ④ (생 략)	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u>⑤</u> ~ <u>⑦</u> (생 략)	<u>⑥</u> ~ <u>⑧</u>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